

2017년 『미술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』 국내 아트페어 활성화 지원 공모 요강
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한국 미술시장의 국제화 및 글로벌 프로모션의 기회 확대를 위해 '미술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'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본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아트페어의 글로벌 역량 및 시장성 향상을 위한 <국내 아트페어 활성화 지원 공모>를 추진하고자 합니다. 본 공모에 참여할 민간단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□ 공모개요

- 공모명 : 2017년 「미술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」 사업 <국내 아트페어 활성화 지원> 공모
- 추진목적 :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아트페어의 시장성과 글로벌 역량 향상
- 공모내용

구분	내 용
공모유형	국내 아트페어 활성화 지원
지원신청 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에서 국제 아트페어를 개최하는 민간단체 ※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는 지원 신청 불가능 ※ 지원 단체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- 2017년 『국내 아트페어 사업 평가』 신청접수원 및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필수 ※ 지원단체 작성용 평가서식은 향후 별도 배포 예정
지원내용	아트페어의 글로벌 브랜딩을 위한 전략적인 해외 홍보·마케팅 프로그램이 수립되어 있는 아트페어 지원
지원규모	지원 단체당 최대 1억원 ※ 문화체육관광부, 외교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국제교류재단 등의 지원대상사업과 중복 지원 결정될 경우 택일하여야 함
지원항목	사업수행을 위한 직접 경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외인사 초청을 위한 사전기획(해외 홍보행사 등) 비용 - 해외인사를 위한 VIP 프로그램(리셉션, 전시투어 등) - 해외 교류프로그램 운영비 및 초청여비 ※ 단, 해외인사 초청여비(항공료 및 숙박비)는 총 지원금의 10%를 초과할 수 없음
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원 신청할 수 없는 항목 (공통사항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단체운영 목적의 자산취득비, 시설비, 수선비, 시설부대비, 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 2. 상근인력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,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, 공과금,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3. 단체 대표자 혹은 지원사업자 본인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 4. 행사 준비를 위한 단순 진행비, 다과비, 국내 교통비 · 숙박비, 유류비 등 5. 기타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선정단체 공통 의무사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모든 홍보/인쇄물에 문화체육관광부,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명 및 로고 포함 - 총 사업비의 10% 이상 자부담 증빙 필수 - 선정 단체 대상 사후(결과공유) 워크숍 참석 - 사업 종료 후 실적보고서¹⁾ 및 정산보고서²⁾ 제출 - 지원 페어에서 판매된 총 실적 및 작품별 판매가격 정보 제출 필수. 제출된 정보는 '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(www.k-artmarket.kr)'에 게재 예정 -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(www.k-artmarket.kr) 기관(아트페어) 회원가입 필수 - '17년 『시각예술실태조사』(*)(구)미술시장실태조사) 응답 필수 - 해당 아트페어 기간 동안 페어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³⁾ 필수 - '17년 『국내 아트페어 사업 평가』 요청자료 제출 및 현장평가 협조 필수⁴⁾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실적보고서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정 서식(작품 판매실적 포함)을 준용하여 작성 2) 보조금(지원금) 정산 시 반드시 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회계검사를 받은 후 정산보고서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회계검사수수료는 <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 기준액> 참고 - 회계검사 사업비 규모는 지원금 신청액과 자부담 증빙금액(총 사업비의 10% 이상)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 3) 설문지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정 서식을 준용하여 페어 관람객에게 배포 후 취합 정산/실적보고서 제출 시 상기 설문지 함께 제출 4) 본 아트페어 평가를 위한 요청자료 및 현장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선정단체 개별 공지 예정 </div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원자격 제외대상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인 - 학교(초.중.고교 및 대학교)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(동아리) - 지방자치단체(광역시·도, 시·군 등 기초 자치 단체), 국·공립(시·도·군립) 문화예술기관 - 과거 문화체육관광부의 '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' 제15조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

□ 지원신청 기간 및 접수방법

○ 접수기간 (※ 하단의 신청접수기간 및 심의기간(안)은 추후 변경 가능)

지원대상 사업기간	신청접수기간(안)	심의기간
2017. 4월 ~ 12월	~ 2017. 4월 10일까지	2017. 4월 중

- 접수방법 : 국가문화예술시스템 <http://ncas.or.kr>에서 접수
 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<http://ncas.or.kr>에 단체명의로 회원가입 후,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
 - 붙임파일의 '지원신청서'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, 기타 필수 제출서류와 함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업로드 및 접수 / **이메일, 우편, 방문접수 불가**
 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'내정보방'에 단체 및 대표자 정보,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수

○ 제출서류 : 전자파일(한글, 워드, PDF) 형태로 제출

no	필수 제출서류	비고
1	지원신청서(*지정서식) 1부	- 지정된 신청서 양식 사용 - 유사 문화예술 활동경력 증빙자료 (예: 행사사진자료, 언론보도내용, 평론자료 등)는 지원신청서의 'E 참고자료' 면에 삽입하여 제출
2	참가화랑별 대표 출품작 이미지 (포트폴리오/*지정서식 ppt 사용)	- 지원신청서에 작성한 출품작품 이미지는 지정서식(ppt)을 사용하여 제출 ※ 개별 이미지 파일 제출 불가능
3	사업추진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(예) 협약서, 계약서, 초청승낙서, 확정된 사업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등	- 지원신청서의 'E 참고자료' 면에 삽입 및 별도의 이미지 파일(JPG, PDF 등)로도 제출
4	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(※ 선택사항)	- 전자파일(한글, 워드, PDF, PPT 등) 형태로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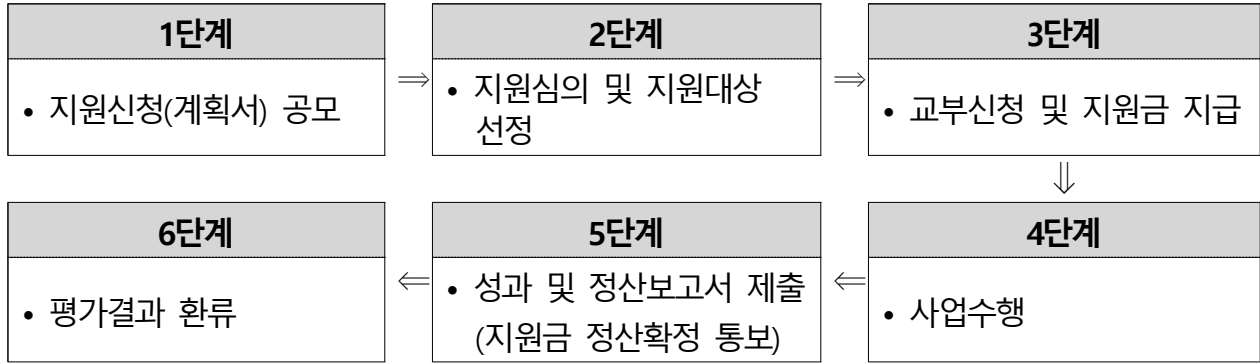
○ 지원문의 : 예술경영지원센터 김소정 (02-2098-2928 / artfair@gokams.or.kr)

□ 심의 및 선정절차

- 심의방법 : 지원 신청자격 및 과거 사업성과 등 서류 심의 및 PT 심의
- 심의방향
 - 해외 주요 인사 초청, 해외 주요 화랑 참여 등 실효성 높은 아트페어 우선 지원
 - 과거 유사 사업의 수행성과(판매실적 등)가 높은 아트페어 우선 지원
 - 해당 사업성과 및 국제적 홍보·과급효과 기대도가 높은 아트페어 우선 지원

○ 서류 및 PT 심의결과 : 국가문화예술시스템에서 개별 확인 및 선정단체별 통보

□ 추진절차



□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(※ 제출 후에는 수정 불가)
- 국고보조금(지원금)은 사전 집행 필수이며 사후 집행 시 환수 조치됨 (※ 2017년부터 국고보조금(지원금) 집행은 e나라도움(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, www.gosims.go.kr) 내에서만 가능)
- 지원신청 예산의 산출근거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(※ 지원신청 예산 내 '회계검사비' 책정 필수)
- 지원신청 내용(이력서 등)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취소될 수 있음
- 신청 사업내용 불이행 시 또는 선정 후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 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됨 (※ 「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」에 따른 지원금 집행 준수
* 예시 : 지원금 지급을 위한 신규통장 개설 필수, 지원금과 자부담 사용 혼용 금지, 타(대표 명의 포함) 통장으로 지원금 이체 금지, 지원금 현금 인출 금지, 사업 수행 후 정산 확정 전 지원금 통장 해지 금지 등)